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주요 내용*

이 대 섭

뉴질랜드와의 FTA는 중국이 OECD 회원국인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1. 개요

중국은 홍콩, 마카오,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같은 제조업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개도국과의 FTA를 우선 체결하였으나, 상품협상은 체결하고 서비스와 투자 협상을 유보하는 방식의 FTA 전략을 추진하여 왔다.

뉴질랜드와의 FTA는 OECD 회원국인 선진국과 체결한 최초의 FTA로 서비스와 투자를 포함한 포괄적인 FTA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중국이 기존에 체결한 FTA에서는 다뤄지지 않았던 인력이동, 지식재산권, 기술규정의 상호 인정 등이 협정문에 포함되었다. 따라서 2008년 10월에 발효되는 중·뉴질랜드의 FTA 주요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한·중 FTA에 관한 양국의 공동연구가 종결된 시점에서 향후 FTA 협상에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추진경위

중국이 뉴질랜드와 FTA를 체결한 동기는 외교·안보 및 경제적 측면에서 대미 견제와 차별화라는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지역 리더십 강화로 인한 수출시장의 다변화, 해외 에너지 및 원자재 확보, 중국기업의 해외진출 촉진, 산업경쟁력 강화 등의 직접적인 효과를 실질적으로 중국경제에 흡수하기 위한 것이라 판단할 수 있다.

* 본 내용은 중국, 뉴질랜드 FTA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대섭 부연구위원이 작성하였다.(ldaeseob@krei.re.kr, 02-3299-4169)

한편 뉴질랜드의 입장에서는 최근 대외무역에서 중국의 위상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고 대중 교역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FTA체결이 뉴질랜드에 긍정적인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한 CER(Closer Economic Relationship) FTA를 체결한 호주가 미국과 FTA를 체결한 것과는 달리 뉴질랜드는 호주를 제외한 주요 교역국과의 FTA 체결에 뒤쳐져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과 뉴질랜드는 2003년 FTA의 통상절차인 공동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이 연구에 따르면 FTA 체결시 양국의 GDP, 무역, 복지 및 기타 부문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2004년 10월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뉴질랜드 방문 이후 양국 간에 FTA 협상이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2005년 5월 헬렌 클라크 뉴질랜드 전 총리가 2005년 5월 중국을 방문하여 FTA 조기 협상을 희망하였다. 그리하여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8년 4월 7일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8년 10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

15차례의 협상 끝에 2008.4.7일 중국과 뉴질랜드의 FTA 협상이 타결되었고 2008.10.1일부터 발효되었다.

3. 주요내용 (농림수산부문을 중심으로)¹⁾

현재 뉴질랜드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96%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1억 1,150만 NZ\$의 관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질랜드의 대중 수출액 기준으로 약 4%에 해당하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혹은 인하를 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을 두었다.

현재 뉴질랜드가 중국에 수출하는 품목의 약 96%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어 1억 1,150만 NZ\$의 관세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중·뉴질랜드 FTA 관세철폐 계획

관세범위	관세철폐시기	비고
0.1%~5%	즉시철폐	뉴질랜드 대중국 수출의 약 35% ¹⁾
5%~20%	2012년까지 철폐	뉴질랜드 대중국 수출의 약 31%
20% 이상	2013년까지 철폐	20% 이상인 상품은 발효첫날에 20%로 시작
기타	2019년까지 철폐	
모직물(Wool) 및 모직 상의(Wool tops)	특정국관세할당적용(Country-Specific Tariff Quota)	

주: 1) 뉴질랜드가 중국에 수출하는 상품 중 관세범위 0.1%~5%에 해당하는 상품 비중이 약 35%라는 의미임.

산림분야

현재 중국은 뉴질랜드산 원목과 제재목에 무관세를 적용하고 있고 FTA협상에서는 라디에타 소나무(Radiata pine)로 만든 몇몇 제품에 한하여 추가적인 관세혜택을 부여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가공목재 및 종이제품에 관해서는 중국이 WTO와의 협정에 따라 FTA에 관계없이 모든 나라에 동일한 조건을 적용해야 하기 때문에 뉴질랜드와의 FTA 협상에서도 현행관세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1) 뉴질랜드는 대부분 품목이 무관세이므로 중국의 관련된 내용을 위주로 설명하였다.

육류

쇠고기, 양고기, 그리고 식용부속고기는 2016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수산물

수산물 중 관세가 5% 이하는 즉시철폐, 5% 이상은 2012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과일 및 채소

사과는 2012년까지, 키위는 2016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낙농

뉴질랜드산 버터, 액상우유 및 치즈는 2017년까지 관세를 철폐한다.

중국은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에 특별세이프가드 및 중간심사조치(Mid-term review mechanism)를 포함시켰다. 이 중 탈지 및 전지분유(2019년까지 관세 철폐)는 중간심사조치 적용 품목으로 중국 낙농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상품무역위원회가 심사하여 사실로 확인되면 최대 1년동안 관세 삭감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낙농품 중 관세 철폐 기간이 10~12년인 제품들은 물량기준으로 관세가 철폐된 후 5년 동안 세이프가드를 적용할 수 있으며 세이프가드 수량 이상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 기준은 표 2와 같이 4개의 부류로 분류하여 각 부류가 표 3에 해당하는 적용 기준에 따라 부과된다. 즉, 상품이 1부류에 속하고 2009년에 수입량이 1,365톤 이상이면 특별 세이프가드가 발동된다.

표 2 특별 세이프가드 적용 낙농품목

부류(상품분류)	HS 코드	상품 세부 내역
1	04012000	지방함량이 1% 초과 6% 미만인 비농축 또는 가당의 우유, 크림
	04013000	지방함량이 6%미만인 비농축 또는 가당의 우유, 크림
2	04021000	고형질 지방 함량이 1.5%이하인 우유, 크림
	04022100	고형질 지방 함량이 1.5% 초과인 무가당 우유, 크림
	04022900	지방함량이 1.5% 초과인 가당 우유, 크림
	04029100	무가당 농축 우유, 크림(고형질 제외)
3	04051000	버터
	04059000	기타 우유에서 추출한 지방, 유지
4	04061000	신선치즈(유장, 응유 포함)
	04063000	가공치즈(파우더로 만들거나 갈지 않은 것)
	04069000	기타 치즈

주: 1) 협정문 13조에 따라 특별 세이프 가드에 적용되는 농산물을 나타낸 것임.

중국은 자국 축산업 보호를 위해 특정품목에 특별세이프가드 및 중간심사조치를 포함시켰다.

표 3 특별 세이프가드(낙농품) - 기준 수량

단위: 톤

바스켓	1	2	3	4
발효시점	1,300	95,000	9,400	3,600
2009	1,365	99,750	9,870	3,780
2010	1,433	104,738	10,364	3,969
2011	1,505	109,974	10,882	4,167
2012	1,580	115,473	11,426	4,376
2013	1,659	121,274	11,997	4,595
2014	1,742	127,309	12,597	4,824
2015	1,829	133,675	13,227	5,066
2016	1,921	140,358	13,888	5,319
2017	2,017	147,376	14,582	5,585
2018	2,118	154,745	15,312	5,864
2019	2,223	162,482	16,077	6,157
2020	2,335	170,606	16,881	6,465
2021	2,451	179,137	17,725	6,788
2022		188,094		
2023		197,498		

주: 1) 협정이 발효된 해를 기준으로 연도별 비율로 할당된 발효조건(Entry into Force) 기준수준을 나타낸 것임.

모직물 (Wool)

중국은 2009년에 25,000톤의 모직물과 450톤의 모직물로 만든 상의(Wool tops)에 특정국 관세할당(Country-specific tariff quota)을 부여하고 2017년까지 연간 5%씩 증가시키기로 했다. 뉴질랜드는 특정국 관세할당 이외에 중국의 전체 모직물 쿼타에도 참여할 수 있다.

양허제의 품목

양허제의 품목 중 농산물은 HS code 8단위 기준으로 214개 품목 중 53품목이다.

표 4 양허제의 농산품

품목명	HS 8단위 개수
곡물	15
곡물의 분과조분 밀가루 전분	10
동식물성 유지	19
당류설탕 과자	6
비료	3

4. 원산지 규정

중·뉴질랜드 FTA 원산지 규정은 중국이 체결한 이전 FTA들과는 뚜렷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 중국이 ASEAN, 칠레, 파키스탄과 체결한 FTA에서는 실질적 변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부가가치를 이용하였지만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세번 변경기준과 부가가치기준을 혼합한 혼합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이 중 한 가치를 만족할 경우 원산지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품목별로 다양하게 적용된다.

5. 중뉴질랜드 FTA 주요 특징

중·뉴질랜드 FTA에서 지식재산권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실효성 측면에서 미진한 부분이 많다.

중·뉴질랜드 FTA에서는 중국측만 양허 제외품목을 설정하였고 자국의 민관 품목인 축산물과 모직제품에 대하여 약 3년 정도 더 긴 유예기간을 확보하였다. 또한 민감품목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나 중간심사를 통한 관세 삭감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확보하였다. 더불어 원산지규정을 비롯한 기타 서비스 및 투자 부문에서는 기존에 중국이 체결한 FTA보다 발전된 내용으로 타결되었다.

하지만 서비스 부문에서 협정 발효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개방일정을 개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점을 고려할 때 협정 발효후 동일한 시간이 경과해도 특정한 협정에 대해 개정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래칫메커니즘(Ratchet Mechanism)을 적용하지 않은 점은 취약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중·뉴질랜드 FTA에서 지식재산권(IPR) 조항은 중국이 체결한 FTA 협정문에 최초로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그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중국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분쟁이 심각한 국가라는 것을 고려할 때 실효성면에서 미진한 부분이라 할 수 있어 한국이 중국과의 FTA를 구상하는데 있어 참고할 부분이다.

참고자료

중국·뉴질랜드 FTA 협정문, 2007(www.ChinaFTA.govt.nz)